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 제도 신설〉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57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 요양지원 제도 신설	2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 : 2026. 4. 7.

다. 회부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요양지원 제도 신설

-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¹⁾를 받는 사람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양로지원) (생 략) <신 설>	제54조의2(양로 및 요양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신 설>	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은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³⁾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양로 지원을 위탁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양로시설(수원 보훈원, 1개소)⁴⁾에 입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와 생활공간을 떠나기 싫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 이용이 저조하고,⁵⁾ 이로 인하여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재가급여를 받거나 거주지 인근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희생·공헌자 본인은 모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유족 중 배우자, 부모(독립유공자의 경우 부모

4) 양로지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법령과 달리, 현행 법은 양로지원에 대한 별도의 위탁규정 없이 양로지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5) 현재 양로시설에 입소하여 양로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국가보훈부, 2025. 12. 기준).

제외)에 대하여도 요양지원 보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본인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양로·요양지원 현황

구분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양로지원	○	○	○	○	○	○	○
요양지원	○	○	×	○	○	○	○
(대상)	본인,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부모	본인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여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및 기존 요양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요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률은 양로지원과 별도로 요양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⁶⁾ 두 제도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6)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모두 양로지원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로지원을 제63조에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제63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유사점이 있으나 지원대상·내용 및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요양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은 양로지원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요양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생활조정 수당수급자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청인 등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⁷⁾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지원 제도(교육지원, 주택의 우선공급)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⁸⁾

개정안도 신청자에 대한 생활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3항 제외)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0. 3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한편, 현행법은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이 제공목적 외의 목적으로 조회·사용되거나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⁹⁾ 개정안에 따른 요양지원에 자료 요청 권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은 모두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0)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모두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일부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보훈대상자(본인) 요양지원 보조율

구분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조율	40%~80%*	80%	60%	40%~80%*	40%~80%*	60%
시행연 도	2012	2016	2016	2016	2016	2016

* 전상군경, · 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이유공자의 경우 80%, 그 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은 40%,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은 60%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기간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 기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은 시행일 외에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 시행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인지 등 개정안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 보조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칙(적용례)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요양지원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다른 보훈관계법률 체계와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방식 및 보조 비율 등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